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가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0조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4조”를 “제6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제60조.....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60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